

발전기금 관리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부금 및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발전기금이라 함은 본교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, 부동산, 유가증권 또는 연구·업무용 물품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기부금품을 통칭한다.

제3조(발전기금 관리의 원칙)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본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부목적의 범위 안에서 선량하게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한다.

제4조(발전기금의 종류) 발전기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- ① 일반발전기금: 기부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한 발전기금
- ② 지정발전기금: 기부자가 장학금, 건축비, 연구비 등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발전기금
- ③ 장학재단 출연기금: 본교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을 위해 출연한 장학재단 출연기금 <신설 2018.3.1.>

제5조(발전기금의 접수 및 관리) 발전기금의 접수 및 기금관리는 경리계에서 담당하며, 기부자관리 및 이를 위한 영수증 발급은 기획처에서 담당한다.

제6조(회계처리) 모든 발전기금은 본교의 경리계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부자에 대한 예우) ①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한다. <개정 2018.3.1.>

- ② 기부자의 기금 규모와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를 고려하여 '15억원 이상' 기부자와 잠재적 기부자에 대한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도 있다. <신설 2018.3.1.>

제8조(발전기금 모금사업비) 발전기금 모금에 필요한 사업비는 대학의 재정상황과 발전기금 모금실적을 고려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의 폐기) 이 규정의 폐기는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에 의한다.
- ③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제정이전에 관리하고 있는 발전기금은 이 규정에 의해서 관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7조 규정은 모든 기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[별표1] 서울신학대학교 기부자 예우혜택 <개정 2018.3.1.>

그 룹 명 예 우 내 용	진 리	성 결	화 평	지 혜	평 화	사 랑	소 망	믿 음
	10억이상	5억이상	1억이상	5,000만원 이상 1억 미만	3,000만원 이상 5,000만원 미만	1,000만원 이상 3,000만원 미만	500만원 이상 1,000만원 미만	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
명 예	강의실 등 고유명칭 부여	강의실 등 고유명칭 부여	강의실 등 고유명칭 부여					
성지순례 무료 (개인 및 교회)	● (4인, 1회)	● (3인, 1회)	● (2인, 1회)	● (1인, 1회)				
기부자의 벽 기록	●	●	●	●	●	●		
건강검진 실시 (배우자포함 연 1회)	●	●	●					
경조사 예우	●	●	●					
기념일 축하	●	●	●					
학교시설 무료이용 (본인 및 직계, 교회, 단체) -결혼식장, 연주회장, 강연회장-	●	●	●	●	●			
Guest Room 무료이용	●	●	●	●	●	●		
평생 교내 주차료 면제	●	●	●	●	●	●	●	
감사패 수여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
평생 도서관 이용증 제공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
자녀영어캠프(AIE) 등록비 30%할인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
평생교육원 수강료 30% 할인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

- 모든 기부자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 세제 혜택을 위하여 영수증 발급
- 모든 기부자에게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와 생일카드 발송
- 기부자 명단을 대학 소식지에 게재
- 대학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대장 발송
- 건물이나 자산을 기부한 경우 기부자 명패 부착
- Guest Room 이용은 연간 7일 이내 사용가능